

「구미시 유·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김민성, 김영길, 김원섭, 김정도, 박세채,
안주찬, 이명희, 이상호, 이정희 의원 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마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유·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유·청소년 스포츠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유·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3조
 -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유·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6세 유년기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또한 구미시는 I-LEAGUE 여름축구축제, 한중일 주니어종합 경기대회 등 유·청소년 관련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관내 스포츠 꿈나무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